

「평창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위

-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16. 06. 13(월) 평창군수(환경위생과장)
- 회부일자 : 2016. 06. 15(수)
- 상정일자 : 2016. 06. 20(월) 제219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자 :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방재정법」(법률 제12507호, 2014.03.24. 공포, 2014.11.29 시행)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 시 법률 또는 조례에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조례에 명시되어야 함.
- 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 및 지원사업 등에 대한 규정 「평창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에 명시하는 등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류지웅)

- 본 개정 조례안은 위생업소의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 내용을 보면
 -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을 확대하였고
 - 안 제10조에서는 심의위원 구성 및 비율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검토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위생업소 지원 시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평창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음식문화개선사업"이란 위생적·경제적·친환경적 음식문화 자율실천으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5. "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역 대표음식 또는 향토음식 개발을 위한 시책사업 참여 업소

4. 군의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법인·단체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수는 지원대상 위생업소에"를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역대표 음식의 개발·보급을 위한 사업

5. 선진 음식문화개선 육성·지원을 위한 선진외식문화 체험
6.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
7.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

제6조 중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업소”를 “제5조의 지원신청자”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대상 위생업소”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문화관광과장, 경제체육과장, 환경위생과장, 도시주택과장, 농축산과장, 기술지원과장, 올림픽운영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